### 공 정 거 래 위 원 회

#### 제 2 소 회 의

의결(약) 제 2021 - 061호 2021. 12. 30.

사 건 번호 2021가조1726

사 건 명 ㈜에듀프라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주식회사 에듀프라임 서울 금천구 벚꽃로 234, 1503호 대표이사 이\*\*

심의종결일 2021. 12. 23.

## 주 문

- 1. 피심인은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각호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2> 기재와 같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제도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교육일정, 교육내용, 교육방식, 시간, 장소 및 교육대상자 등에 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 이 유

#### 1. 기초사실

#### 가.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 주식회사 에듀프라임은 가맹점 사업자에게 영업표지 '노래하는크레용'을 사용하여 만든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면서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점 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 <班 1>

##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개, 천 원, 부가세 미포함)

설립일	2020년 자산총액	매출액			2020년 12. 31. 기준		
		2018년	2019년	2020년	당기 순이익	가맹점수	상시 종업원 수
2008. 8. 1.	3,528,926	1,691,270	2,307,495	1,355,767	54,266	80	12

<sup>※</sup>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 다. 시장구조 및 실태

#### 1) 국내 가맹사업현황

수, 가맹점 수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 2>와 같다.

## <표 2> 최근 5년간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현황

(단위: 개)

연도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가맹본부 수	4,268	4,631	4,882	5,175	5,602
영업표지 수	5,273	5,741	6,052	6,353	7,094
가맹점 수	218,997	230,955	243,454	254,040	258,889
직영점 수	16,854	17,135	17,315	16,114	NA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시스템(http://franchise.ftc.go.kr)

#### 2) 가맹사업 운영형태

-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 5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표 3>과 같고,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신의 업종 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 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3>

#### 가맹금의 종류

구 분	형 태	예 시
유형 ①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가입비,입회비, 가맹비,교육비,계 약금 등
유형 ②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 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보증금, 담보제공 등
유형 ③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설비·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인테리어 비용, 최초 공급상품 비용 등

유형 ④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 정액 또는 매출액·영업이익 등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 대가 -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원재료·부재료·정착물·설비 및 원자재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특허권에 대한 대가는 제외)	상품사용료, 광고분담금, 물품대금의 유통이익 등
유형 ⑤	그 밖에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 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 2. 위법성 판단

#### 가. 인정사실 및 근거

-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서 등록 전 가맹계약 체결 현황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sup>4)</sup>) 및 가맹계약서(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 나. 관련 법규정

#### 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sup>2)</sup> 피심인은 가맹사업법 제3조(적용배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sup>3)</sup> 피심인의 영업표지 '노래하는크레용' 정보공개서는 2020. 6. 22. 최초 등록되었다.

<sup>4)</sup>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호증'은 '소갑 제○호증'으로 기재한다.

-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④ (생략)

#### 법 시행령 제6조(정보공개서의 제공 등)

-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3호및 제4호의 경우에는 문서의 형태로 인쇄 또는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취하여야 한다.
  -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하는 방법.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모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성(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은 가맹희망자가 자필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주어야 한다.
    - 가.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다는 사실. 제공받은 일시 및 장소
    - 나. 가맹희망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가맹희망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 라. 가맹본부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 2.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의 제공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제공하는 방법
- 3.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게시한 후 게시사실을 가맹희망자에 게 알리는 방법. 이 경우 가맹본부는 특정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읽어 본 시간을 그 가맹희망자 및 가맹본부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야 한다.
- 4. 가맹희망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포함된 전자적 파일을 보내는 방법. 이 경우 가맹본부는 전자우편의 발송시간과 수신시간의 확인이 가능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② ~ ③ (생략)
-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 대표) 등 69인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거나 57인의 가맹희망자에게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법제7조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 3. 처분

되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피심인에 대하여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고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된 피심인의 책임임원과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실시 명령을 부과한다.

###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0 피심인은 2021. 11. 15.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 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 5. 결론

기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 2021년 12월 30일

의 장 위 원 김 성 삼

위 원 윤 수 현

위 원 정 진 욱

# <별지 1> (비공개)

#### <별지 2>

## 교육명령

- 1. 교육기한 :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2. 교육시간 : 1인당 3시간
- 3. 교육이수대상자 : 2명(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된 책임임원 1명, 업무담당 직원 1명)
- 4. 교육내용 :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된 법 조항
  - < 교육내용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
  - 가. 피심인이 종사하는 업종 분석
  - 나. 위반 법조항의 위법성 요건
  - 다. 피심인의 당해 행위가 법위반이 되는 이유
  - 라. 향후 법위반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방안 제안
  - 마. 위반 법조항과 관련된 유사 심결례 및 판례
  - \* 교육자료 작성시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것
- 5. 교육이수기관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한국공정경쟁연합회
- 6. 평 가 : 교육기관이 교육한 내용을 평가
- 7. 교 육 비 : 교육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심인이 부담함
- 8. 이행절차
  - 가. 교육실시 전 교육대상자별 인적사항, 교육이수 일시 및 장소, 교육기관 명, 강사, 교육 내용(교육자료), 교육방식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
  - 나. 공정거래위원회는 교육내용, 교육방식, 강사 등이 교육명령 취지에 부족 하거나 부적합할 경우 해당사항의 보완을 권고하고 피심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 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
  - 다. 교육실시 후 교육대상자별 인적사항, 교육이수 일시 및 장소, 교육기관 명, 강사, 교육내용(교육자료), 교육방식, 평가결과를 교육기관 발행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